

## Stock Option 부여 후 액면분할 등 발생시

### 현행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제도란?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제도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써 이를 통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추구하는 목표를 일치시켜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는, 1997년 1월 13일 증권거래법 개정시 상장법인 등 일부 특정한 회사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당시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라 하였음)한 후 1999년 12월 31일 상법 개정시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여 상법상의 제도로서 수용함으로써 모든 주식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세법에서는 벤처기업 등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자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

#### 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이 아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 § 15 ①).

##### ♠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조특법 § 15 ②)

1.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액면분할·무상증자 등의 경제적 사건 발생시 문제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매수가격)이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커야 한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약정 기간동안 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과 같이 부여법인의 주당가액이 변동되게 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당초의 매수가격(행사가격)과 부여수량(행사수량)을 변경하여야만 한다.

만일 액면가액은 1/2로 감소하고, 수량은 2배로 증가하는 액면분할을 예로 들면, 행사가격은 당초 행사가격의 1/2로 줄어들어야 하고, 부여수량은 당초의 2배로 증가되어야만, 경제적 실질 관점에서 볼 때, 당해 Stock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액면분할 전과 동일한 크기의 행사이익 등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무상증자 등 주당가액이 변동하게 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세심판례(국심2003중757, 2003.07.04 및 국심2005서4117, 2006.06.29)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정한 ‘주식의 매수가액’을 추후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매수가액이 당초 부여시점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액면분할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1085, 2006.06.13, 서면1팀-1341, 2004.10.01 등)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액면분할로 인하여 수량 및 매수가격이 변동되더라도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하여, 문구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세심판례의 결정 내용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하 상기 국심사례 및 유권해석에 의할 때, 액면분할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 사례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 액면분할 전·후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례1) 액면분할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2003.1.1.) 현재의 시가 등
  - 시가 : 6,000 원
  - 매수가격 : 8,000 원
  - 부여주식수 : 10,000주
  - 행사가능기간 : 2006.1.1. 이후 2년간 행사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2006.1.1.) 현재의 시가 등
  - 시가 : 11,000 원
  - 행사수량 : 10,000 주

(사례 2) 액면분할이 발생한 경우

- 상기 (사례 1)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액면분할의 실시
  - 액면분할일 : 2005.12.31.
  - 액면분할 내용 : 1주를 2주로 분할. 즉, 액면가액은 1/2로, 발행주식수는 2배로 증가
  - 액면분할로 인해 변경된 매수가격 : 4,000 원
  - 액면분할로 인해 변경된 부여주식수 : 20,000 주
- 행사일(2006.1.1.) 현재의 시가 : 5,500 원

상기의 예에서 액면분할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례1)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행사이익 3천만원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반면, 단순히 액면을 1/2로 줄이고 주식수량을 2배로 늘리는 액면분할을 한 (사례2)의 경우에는, 실제 매수가격(4,000원)이 부여일 현재의 시가(6,000원)보다 작기 때문에 행사이익 3천만원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상기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액면을 쪼개는 것에 불과한 액면분할이라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 동일한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여일 이후 약정기간 동안 무상감자 또는 액면병합이라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기의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명확한 유권해석 또는 심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국세심판례와 같이, 행사시점의 매수가격과 부여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한다면, 부여시점에서는 과세특례의 대상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시점에는 과세특례의 대상으로 둔갑하는 크나 큰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사례로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3) 액면병합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2003.1.1.) 현재의 시가 등
  - 시가 : 8,000 원
  - 매수가격 : 5,000 원
  - 부여주식수 : 10,000주
  - 행사가능기간 : 2006.1.1. 이후 2년간 행사 가능
- 액면병합의 실시
  - 액면병합일 : 2005.12.31.
  - 액면병합 내용 : 2주를 1주로 액면병합. 즉 액면을 2배로 인상하고 발행주식수를 1/2로 줄임
  - 변경된 매수가격 : 10,000원
  - 변경된 부여주식수 : 5,000 주
- 행사일(2006.1.1) 현재의 시가 : 16,000 원(액면병합전 시가 : 8,000원)

상기와 같은 예에서, 액면병합이 없었다면, 부여일 현재의 매수가격(5,000원)이 부여일 현재의 시가(8,000원)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액면병합의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국심사례와 같이 실제 매수가격과 부여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면, 실제 매수가격(10,000원)이 부여 당시의 시가(8,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행사이익 3천만원에 대하여 고스란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부여일 및 행사일 현재의 주가가 공히 8,000원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행사일까지 실질적인 기업가치의 증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인정하게 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주당가치가 변하게 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매수가격’ 과 ‘부여 당시의 시가’ 를 단순히 상호 비교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 및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례 적용의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고 아니할 수 없다.

#### 4. 제 안

앞에서 당연히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단순히 액면분할에 의하여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경우와, (변경된 매수가격과 부여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당연히 과세특례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단순히 액면병합으로 인하여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상기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여일 이후 회사의 주당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액면병합,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 관점에서는 매수가격(행사가격)과 부여주식수에 변경이 초래될 수 밖에 없는 바, 국심사례와 같이 “변경된 매수가격”과 “부여당시의 시가”를 비교, 즉 하나는 변경된 후의 가액으로 다른 하나는 변경전의 가액으로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변경된 매수가격”과 “그 날의 시가”를 비교하여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날 현재의 시가에는 이미 “부여일~경제적 사건 발생일의 전일”까지의 기업가치 증가분(감소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치 증가분(감소분)을 계량화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존재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도 될 것이나,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계량화 방법을 찾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필자의 견해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부여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주당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의 유형별(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액면병합,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거 환산후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환산 후 시가”와 “변경된 매수가격”을 비교하여 “변경된 매수가격”이 “당해 환산 후 시가”보다 큰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ext{환산후 시가} = \text{환산전 시가}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 \div \text{조정전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증자 및 액면분할인 경우에는 +로, 감자 및 액면병합인 경우엔 -로 처리
- 1주당 발행가액 :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시엔 유상증자·감자 단가를,

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인 경우에는 0으로 입력

다만, 상기의 환산식은 스톡옵션표준모델제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스톡옵션 표준모델의 행사가격 환산방법을 차용한 것으로 예시적인 것인 바, 만일 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상기보다 더욱 더 정치(精緻)한 산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상기 내용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과 그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